

제4차 임시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

2021. 5. 31.

증 권 선 물 위 원 회

1. 일 시 : 2021년 5월 31일(월) 14:00~17:54

2. 장 소 : 온-나라 PC 영상회의

3. 출석위원

도 규 상 위 원 장

*의결 제124호 논의 중 퇴장

이 명 순 위 원

이 상 복 위 원

이 준 서 위 원

박 재 환 위 원

4. 회의경과

가. 개회

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, 2021년도 제4차 임시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

1) 안건 심의

- 의결안건 제124호 『□□□□□(주)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및 ◇◇◇◇◇◇◇◇◇◇(주)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조사결과 조치안』 을 상정함

※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.

- ▶ (진술인) □□□□□(주) 대표이사 A임. 금감원은 ○○○의 ●●●●●●● Meeting은 허가결정기구가 아니라 사전컨설팅 성격임을 이해하지 못했음. 또한, Meeting 회의록의 전체 맥락을 무시한 채 한두 단어를 거론하면서 신약 허가는 안 난다고 단정했음.
- ▶ (진술인) 법률대리인 B임. 부정거래의 핵심내용은 □□□□□(주)의 A가 △△△△△의 임상3상 결과와 관련해서 사실은 임상실패였고, ○○○ 신약 승인 신청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고 받아 알고 있음에도 고의로 허위포시하거나 위계에 의한 부정거래를 했다는 것임. A는 사실 (fact)을 날조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음. 그다음 미공

개정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음. 혐의요지는 A가 ◇◇◇◇◇◇◇◇◇◇(주)과 ◆◆◆◆◆ 사이에 M&A하는 것을 H에게 전달해서 주식매매거래에 이용하게 했다는 혐의임. 그런데 H에게 정보전달한 사실도 없고, 접촉한 사실 그 자체가 없음.

○ (위원) 불법적인 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금감원 동의하시는지?

- (보고자) 저희들이 보기에 실현이익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무형적인 이익을 얻었음. 자본시장법상 허위기재 부정거래행위는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임.

▶ (진술인) 매도한 사실이 없는데, 개인적으로 이득을 본 것이 없는데 사기적 부정거래로 의율한 전례가 있는지를 들어보고 싶음.

- (보고자) 여기에서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무형적이고 소극적인 이익행위도 다 포함하여 폭넓게 해석되는 것으로 판례에도 있음.

○ (위원) ‘『제약·바이오 업종 기업을 위한 포괄공시 가이드라인』 (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본부, 2020.2.)에 따르면 “정식 신약 허가(●●●) 신청 및 그 결과통보는 공시대상이나, 심사 단계에서 보완요청서한을 송부받는 경우 등은 규제기관의 최종결정이 아니므로 공시의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

다.”라고 안내하고 있는 바, ●●●●●●●● Meeting은 ○●○
●○를 위한 일종의 의견교환 등 컨설팅을 받는 사전자문적 성격의 회의일 뿐, 어떤 구속력도 갖지 않음. 즉, 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더라도 그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’이라고 적시하셨는데 금감원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는지?

- (보고자) 한국거래소의 가이드라인은 심사단계에서의 보완요청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, 지금 ○○○의 임상결과에 대한 자료제출 내지 ○●○ 신청과 관련된 의견은 일부 사항에 대한 보완요청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움.

▶ (진술인)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‘○○○에 ●●●●●●●● Meeting 등 공식적인 임상시험에 선행되는 사전적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공시의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. ●●●●●●●●가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절차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공시를 하면 오히려 시장에 혼란이 생깁니다.’ 라고 되어 있음.

- (보고자) 지금 변호인이 말씀하시는 한국거래소 가이드라인은 본 건 관련된 것 이후에 나온 것임.

(16시35분 정회)

(16시53분 속개)

▷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.

▷ 증선위원장 퇴장(증선위 상임위원이 이어서 회의주재)

※ 두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.

▶ (진술인) 본 건은 정황만 있을 뿐이고 증거가 전혀 없고, 따라서 일시, 장소 등도 특정되지 않은 추측에 근거한 것임. 저는 문제기간 동안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음. 본 건은 당시◇◇◇◇◇◇◇◇◇◇(주) 주가가 □□□□□(주)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하락하였다고 판단되어 일부 자금으로 분할 매수한 사례로 저로서는 지극히 통상적인 거래였을 뿐임.

○ (위원) 왜 본 건만 문제 삼느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금감원 의견은 어떠한지?

- (보고자) 저희들이 매매형태를 봤음. 자금조달도 상당히 급하게 했고, 매매양태를 보면 시장가 매수를 하는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매매양태를 보였다고 저희들은 판단하였음.

▶ (진술인) 제가 미공개정보를 수령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려고 급하게 자금을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전형적인 오해임.

○ (위원) 진술서에 보면 왜 이것만 문제 삼느냐 하는 취지이신 것인지?

- ▶ (진술인) 제 입장에서는 우연한 정황에 의해서 이렇게 수익을 거둔 것인데 다른 손실도 많이 보고 일상적인 거래도 했는데 이 거래만 특정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제 입장임.
- (보고자) 저희가 H님을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한국거래소에서 감리를 하였음.
- (위원)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주식 투자자금의 상당부분을 □□□□□(주) 관련주를 매매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?
- ▶ (진술인) 저는 A를 만나보니 능력이 또 신뢰가 가고 또 그 약이 중국에서 현재 시판되고 있는 약이어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망이 좋고 사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산 것임. 특별히 정보를 듣고 그때그때 유리해서 산 그런 것이 아님.
- (위원) 특정 시점의 주식 보유 현황은 예전 계좌를 확인해 보면 나올 테니까 그 시점의 □□□□□(주) 관련 주와 非□□□□□(주) 관련 주 이렇게 나누어서 2018년 2월~3월 시점의 주식 보유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, 금감원도 그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. 금감원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. 진술인께서 그 시기에 보유, 매수, 매도한 상황과 전체적으로 수 없이 많이 했는데 왜 하필 그 시기만 또 문제가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금감원에서는 진술인께서 □□□□□(주) 관련 주를 보유·처분 혹은 매

수·처분하는 전체 시기에 걸쳐서 대개 어떤 매수·보유·매도 양상을 보이는지, 전체적인 부분과 문제가 되는 시기의 거래 양상을 최대한 비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교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▷ 두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.

○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

⇒ 보류*함

* 만장일치로 보류를 의미함(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)

나. 폐회선언

위원장이 2021년도 제4차 임시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

(17시54분 폐회)